

# 國家人權委員會設置法(案)

1999. 2.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

## 1. 제정취지

### ①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선진민주사회를 구현

- 「국민의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의 기초인 인권의식을 고취·확산하고 질서와 인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즉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선진민주사회를 지향하기 위함.

### ② 인권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민의 정부」의 인권신장 의지를 천명

- 인권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각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우리 나라는 과거 권위주의정권하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인권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정부의 확고한 인권신장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함.

### ③ 인권보장의 실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 제정

- 현존하는 제도와 정부의 기능만으로는 인권의 완전한 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여 ①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②인권관련 법령·제도등의 연구 및 그 개선권고, ③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예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제시 및 권고, ④인권단체 및 국제인권기관과 교류·협력, ⑤인권침해 또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인권보호기능의 허점을 감시·보충하게 하기 위함(대통령선거 공약사항, 새정부 100대 정책과제)

## 2. 주요골자

가. 모든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킬 국가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권'을 「헌법,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 및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자유」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함.(안 제2조)

다. 이 법에서 말하는 "국제인권조약"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였거나 가입·비준할 수 있는 국제조약중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안 제2조 제2항)

라. 「국가인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립함.

(1)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약칭함)를 국가기구로 하되 법인격을 부여함.(안 제3조, 제4조)

(2) 위원회의 업무는 ①인권관련 법령에 관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자문 또는 권고·의견표명, ②인권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대해 권고·의견 표명, ③인권관련 법·제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④인권침해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제시 및 권고, ⑤국제인권조약 비준 여부 및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조치의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⑥인권교육 및 홍보, ⑦인권침해 또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⑧인권단체 및 국제인권기관과 교류·협력 등 임.(안 제23조)

(3) 위원회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하며(안 제21조 제1

항),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에서 제외하여(안 제21조 제2항) 독립성을 보장함.

(4) 위원회의 구성으로 중요사항의 의결기관인 전체위원회(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됨), 전체위원회 업무중 일부를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두고, 직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사무처 산하에 자방사무소를 두며(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소속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를 두고, 인권보호 및 향상에 필요한 제도·연구와 위원회 소속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인권연구기관을 둠.(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5)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의 상임인권위원으로 구성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의 신망이 높은 사람 가운데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4년임기, 1차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신분을 보장하고 겸직을 못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6)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위원전원(9명)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2조)

(7) 전체위원회 관장사항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전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봄.(안 제13조)

(8) 사무처는 사무총장 및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함.(안 제15조)

(9) 지방사무소는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와 조직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9조)

(10) 위원회 내에 위원회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의 의결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둠.(안 제18조)

(11) 인권연구기관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방안, 위원회의 업무관련 사항의 연구·조사 및 소속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함.(안 제20조)

(12) 인권위원, 위원회 소속직원 및 위원회 업무 관련자는 비밀준수의무를 지님.(안 제22조)

(13) 위원회는 진정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인권침해행위를 조사와 처리를 함.(안 제37조)

(14) 위원회는 ①국가기관의 협의의무, ②법령에 대한 자문 및 권고, ③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작성지원, ④인권상황의 조사, ⑤시설의 방문 및 조사, ⑥공청회 개최, ⑦정책과 관행의 개선또는 시정권고, ⑧일반지침의 작성과 권고, ⑨인권교육과 홍보,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권한을 가짐.(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15) 위원회는 시설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진정에 대하여 진정의 각하하고, 직권으로 조사·처리를 함.(안 제38조, 제39조)

(16)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속 공무원은 그 사람에게 진정서·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 제1항)

(17)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이송하도록 함.(안 제40조)

- (18) 위원회는 조사방법으로서 당사자,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잔술청취권, 장소·시설·물건등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권을 인정함.(안 제41조)
- (19)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①진정의 기각, ②합의권고, ③조정, ④법률구조, ⑤소속기관등에 대한 권고, ⑥임시조치, ⑦처리결과의 공개등을 규정함.(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 (20) 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위원의 민형사상 책임면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시 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함.(안 제55조, 제56조, 제57조)
- (21) 위원회와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 법의 위반행위 및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위원회가 고발 및 징계 요구를 하도록 함.(안 제58조, 제59조, 제60조)
- (22) 이 법에 의해 처음 임명되는 인권위원중 4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 (23) 인권의 보호와 향상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 (24) 제3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98년 2월 24일까지 정치적 동기로 공권력에 의하여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에 관한 진정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제4조 【위원회의 법인격】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인권위원

제5조 【구성】

제6조 【인권위원의 임명】

제7조 【인권위원의 자격】

제8조 【인권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장의 임명과 직무】

제10조 【신분보장】

제11조 【겸직 등의 금지】

제12조 【전체위원회】

제13조 【소위원회】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5조 【사무처】

제16조 【공무원의 임용등】

제1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8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9조 【지방사무소】

제20조 【인권연구기관】

제21조 【예산회계】

제22조 【비밀준수의무】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3조 【업무】

제24조 【국가기관의 협의의무】

제25조 【법령에 대한 자문 및 권고】

제26조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작성지원】

제27조 【인권상황의 조사】

제28조 【시설의 방문 및 조사】

제29조 【공청회】

제30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제31조 【일반지침의 작성과 권고】

제32조 【인권교육과 홍보】

제33조 【인권자료실】

제34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제35조 【보고서작성 및 제출】

제36조 【공무원 등의 파견】

####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처리

제37조 【진정】

제38조 【시설수용자의 진정】

제39조 【진정의 각하와 조사의 개시】

제40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제41조 【조사의 방법】

제42조 【인권위원회의 제척 등】

제43조 【진정의 기각】

제44조 【합의의 권고】

제45조 【조정】

제46조 【조정의 효력】

제47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48조 【법률구조】

제49조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

제50조 【소속기관 등에 대한 권고】

제51조 【임시조치 등】

제52조 【불이익의 금지】

제53조 【조사와 조정의 비공개】

제54조 【처리결과의 공개】

## 제5장 보칙

제55조 【위원회의 책임면제】

제56조 【관련기관 등 및 민간단체와 협력】

제57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제6장 별칙

제58조 【별칙】

제59조 【과태료】

제60조 【고발 및 징계요구】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최초 인권위원의 임기】**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 【과거인권침해의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킬 국가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및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말한다. 다만, 제4장에 의하여 조사와 처리의 대상이 되는 인권은 그 장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국제인권조약”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였거나 가입·비준할 수 있는 국제조약 중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구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 심사원

2.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3. 군교도소, 군구치소 및 현병대에 설치된 영창

4. 외국인보호시설

5. 다른 법령에 따라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

④ 이 법에서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시설수용자”라 함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

보호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관계기관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자료 등”이라 함은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제출요구, 검증, 감정, 영치의 대상으로 삼는 문서, 자료, 물건 등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당사자”라 함은 법 제37조의 진정인, 진정인이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을 한다.

⑨ 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회의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보 및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⑩ 이 법에서 “소속기관 등”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속해 있거나 그들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사실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법인격】**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명의로 재산권의 특별변경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인권위원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6조 【인권위원의 임명】 ①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데에는 인권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위원의 자격】 ①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의 신망이 높은 사람 가운데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인권위원중 3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의 보수와 예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인권위원의 임기】 ① 인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인권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궤적이 되는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처를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연장자인 인권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신분보장】 인권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2. 장기의 질병이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1조 【겸직 등의 금지】 ① 인권위원은 제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수를 받는 직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그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 【전체위원회】 ① 위원회에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를 둔다.

- ② 전체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47조에 의한 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하거나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체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8. 이 법에서 전체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 ④ 전체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인권위원 제적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과 전체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전체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 직제 및 직원의 청원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사무총장 및 소속 공무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공무원의 임용 등】 ① 위원장은 이 법과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휴직, 면직 또는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구분, 직급,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1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직,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한다.

**제19조 【지방사무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사무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인권연구기관】**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방안,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연구·조사를 위하여 인권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연구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예산회계】** ① 위원회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은 감사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서 제외한다.

**제22조 【비밀준수의무】** 인권위원, 인권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그밖의 사람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문서,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법령안에 관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한 자문 또는 권고
2.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4.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의 제시 및 권고
5.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여부 및 국제인권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6. 인권교육 및 홍보
7. 인권침해 또는 인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8. 인권단체 및 국제인권기관과 교류·협력
9. 기타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국가기관의 협의의무】 ①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법령에 대한 자문 및 권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국회에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법령안의 내용
2.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 및 그 내용
3.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여부 및 국제인권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

**제26조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작성 지원】** ①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인권상황의 조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요구

제28조 【시설의 방문 및 조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권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방문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위원회의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공무원 또는 전문가(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의 장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모든 장소와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관계자 또는 시설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장에게 면담이나 진술 또는 서면의 작성사실과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인권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내의 일정한 장소 또는 상황에 관하여 검증을 하거나 조사한 자료 등의 원본 또는 등본,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⑦ 그밖에 이 조에 의한 방문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제2항에 의한 이행계획을 작성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 또는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제2항에 의한 관계 기관의 이행내용 또는 이행계획, 제4항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설명한 이유를 공표할 수 있다.

**제31조 【일반지침의 작성과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분야에 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판단기준, 인권의 침해를 예방하거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해야 할 조치의 내용,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할 경우, 관계기관 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침을 공표하고,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2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내용과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시설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33조 【인권자료실】 ① 위원회는 그 산하에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 ② 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매체 등을 수집·정리하여 일반 국민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인권자료실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 ④ 그밖에 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34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계속중인 재판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5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된 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조치사항과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제2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6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 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처리

- 제37조 【진정】**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공권력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과 통

## 신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②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차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또는 달리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제38조 【시설수용자의 진정】**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 등은 진정서의 작성사실 및 그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위원회의 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위원회로부터 그 통보에 대한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를 발급받아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인권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원 또는 공무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인권위원 또는 공무원의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회는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 및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 및 그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 【진정의 각하와 조사의 개시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다만, 전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의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자 조사를 원하지 않는 뜻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5.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6. 진정이 익명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거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이 그 진정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진정을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진정을 이송할 수 있다. 이때 이송을 받은 기관은 그 진정에 대한 조

사 또는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이송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40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이때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제출된 때에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등의 영치
3. 조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위원, 공무원 또는 전문가(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관련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에 당사자, 관계인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또는 증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검증, 증인 또는 감정인의 전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장 제2절, 제3절, 제5절, 제6절을 준용한다. 다만, 구인에 관한 절차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접근이나 검증,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인권위원의 제척 등】** ① 인권위원 및 제47조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상환의무자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때

2. 인권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인권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인권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② 당사자는 인권위원에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인권위원을 기피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위

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인권위원은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사건의 조사·처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 【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경우

3. 진정에 대하여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종결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 【조정】** 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종결된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4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절차를 시작한 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다음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3.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4.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6조 【조정의 효력】** 제45조 제2항에 의한 조정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7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회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 조정위원 중 3인은 인권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분장, 조정의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법률구조】** ① 제45조 제6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권리구제를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결정한 경우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률구조법 제4조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에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이 조에 의한 법률구조의 절차,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결과 또는 수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소속기관 등에 대한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4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30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임시조치 등】** ① 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중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또는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당해 직무배제

6.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인, 참고인 또는 증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명예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받은 사항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2조 【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3조 【조사와 조정의 비공개】** 이 장에 의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와 조정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내용을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4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보칙

제55조 【위원회의 책임면제】 위원회와 인권위원, 위원회의 공무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 및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 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6조 【관련기관 등 및 민간단체와 협력】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관련 기관 등 및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등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그 업무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동일시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장 별칙

제58조 【별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서의 작성·제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
2. 제28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자

4.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위반한 자

2. 제38조 제1항에 따른 진정서의 작성사실 및 그 내용의 비밀을 침해한 자

3. 제38조 제3항에 위반한 자

4.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5. 제51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조치의 요구를 거부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에 의한 위원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제59조 【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없이 제38조 제6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57조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이 조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하고 법무부장관이 정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그 결정문을 법무부장관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이 조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60조 【고발 및 징계요구】 ① 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게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 또는 징계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인권위원의 임기】 이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임명되는 인권위원 중 4명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여 임명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에 제4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 3 [인권특별위원회]

(1) 인권의 보호와 향상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권특별위원회를 둔다.

(2) 인권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 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인권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② 국회법 제1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총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

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국회법 제12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조사의~~ ~~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과거인권침해의 조사】 제3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98년 2월 24일까지 정치적 동기로 공권력에 의하여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에 관한 진정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사할 수 있다.